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01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5894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01730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19.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는 C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 번	체결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최종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관
1	2012. 7. 19.	9,000만 원	2013. 7. 18.	2019. 7. 12.	1억 원	중소기업은행
2	2016. 3. 10.	8,500만 원	2017. 3. 9.	2020. 3. 6.	1억 원	중소기업은행

2)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7. 19.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8,000만 원을, 2016. 3. 17. 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부터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되,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여야 하고(제10조), 주채무자가 주채무이행기한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 1) 중소기업은행은 2019. 8. 2. 원고에게 C가 2019. 7. 13.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 2) 원고는 2019. 12.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대출 원리금 153,126,311원(= 원금 149,000,000원 + 이자 4,126,3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하여 2,913,377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2019. 7. 13.부터 2019. 12. 12.까지의 위약금은 617,030원이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원고의 B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B의 처분행위

B는 2019. 4.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9. 4. 18. 접수 제67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합의에 따른 것이었다.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질이 대물변제합의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B의 연대보증계약이 모두 성립되어 있었고,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신용관리정보에 B가 2018. 12. 1. 500만 원의 국세를, 2019. 7. 1. 6,876,000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각 등록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9. 7. 13. 실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마. 사해행위의 성립

1) 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내용	금액(원)	참조
1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건물 G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0,000,000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20.05.19. H조합 회신, 갑 제31호증의 1~4
2	위 F건물 I호	74,457,500	
3	위 F건물 J호	74,457,500	
4	위 F건물 K호	74,457,500	
5	위 F건물 L호	89,495,450	

6	위 함안군 M, N호	96,111,800	갑31-5
7	위 M, J호	125,154,600	갑31-6
8	위 M, O호	125,154,600	갑31-7
9	위 M, P호	125,154,600	갑31-8
10	위 M, Q호	125,154,600	갑31-9
11	위 R건물 S호	96,000,000	갑31-10
12	위 R건물 T호	96,000,000	갑31-11
13	위 R건물 U호	96,000,000	갑31-12
	합계액	1,267,598,150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내용	금액(원)	참조
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갑1-1
2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갑1-2
3	H조합	잔존대출금 합계	165,000,000	20.05.19. H조합 회신
4	V조합	16.05.25. 대출 (계좌번호 1 생략)	150,000,000	20.06.11. D 회신 7.8,11/12면 각 참조
5	V조합	16.05.25. 대출 (계좌번호 2 생략)	74,000,000	
6	V조합	16.05.25. 대출 (계좌번호 3 생략)	80,000,000	
7	V조합	13.12.17. 대출 (계좌번호 4 생략)	80,000,000	
8	V조합	15.04.21. 대출 (계좌번호 5 생략)	40,000,000	
9	V조합	16.02.03. 대출 (계좌번호 6 생략)	210,000,000	

10	W공제조합	17.08.31. 대출	114,400,000	
11	기업은행	12.07.14. 대출	109,200,000	
12	신용보증기금	19.08.02. 가압류금액	31,000,000	갑28
13	X	17.02.21. 전세금	25,000,000	갑31-1
14	Y	17.07.17. 전세금	55,000,000	갑31-2
15	(주)Z	17.09.12. 근저당최고액	7,000,000	갑31-3
16	AA	17.05.02. 전세금	40,000,000	갑31-4
17	AB	16.09.09. 근저당최고액	100,000,000	갑31-5
18	AC	18.08.16. 가압류금액	58,972,380	갑31-10
		합계금	1,539,572,380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악의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 단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갑 제2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2. 10. AD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D은 2019. 4.

26.까지 AE복지관 신축공사 현장과 AF 소방서 신축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29,347,561원이다. 한편, B는 AD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B, AD, 피고는 2019. 4. 3.경 B의 AD에 대한 채무와 A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각 변제에 갈음하여 B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는 매매대금을 7,2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금 4,1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중도금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각 갈음하고, 잔금은 각 채무를 2,8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에 총당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는 실질이 대물변제약정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체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매매대금은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에 부합하고, 담보대출금, 임대차보증금, 총당되는 채무액도 피고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B는 AD에 대한 자신의 채무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당시 B에게는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 피고와 B가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B는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B를 만나 그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고, B는 본인이 시행을 과정에서 분양이 안 되어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를 대물변제로 활용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앞서 살폈듯이, 원고는 사해행위를 매매계약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장 기재와 달리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다.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였을 때 현 상태에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소장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셈인데, 계약의 실질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그 의미 및 경위에 대한 주장은 원고의 명확한 반론 제기가 없음에도 이를 배척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한철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남 함안군 E, AG에 있는

F건물 AH동

[도로명 주소] 경남 함안군 A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AJ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G호 44.58㎡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1. 경남 함안군 E 대 389㎡

2. 경남 함안군 AG 대 74㎡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6300분의 4008.끝.

1) 원고는 사해행위를 매매로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실질이 대물변제라고 주장 증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사해행위를 매매로 특정하였을 때의 문제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기술하였다.

